[서식 예]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



							허		부	
재판기	록 열림	} 등	동사 청] 구	서					
청 구 인	성 명					전화				
		담딩			담당시	사무원				
	자 격					소명	자료			
청구구분	□ 열 람 □ 등 사									
대상기록	사건번호	사 건 명				재 판 부				
Alaberta										
열람 또는 등사할 부분										
	(등사매수 매)									
등사방법	□ 필 사		변호	호사단체	세 복	-사기] 법	원복사기]
청구수수료	□ 500원 □ 면 제									
등사비용	(□}×100	원))								
비고										
영수일시	2000.			:	Ò	う 수인				

【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(재일 2003-3) 개정 2003.9.15. 재판예규 제913호】

- 1. 청구인, 영수인 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
- 2. 소송대리인 · 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 · 등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
- 3. 청구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 다만,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·소송대리인· 변호인(사무원 포함)·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인 열람·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수료 면제
- 4.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제출기간	www.klac.or				
제출부수	출부수 신청서 1부		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		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)						
기 타	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·복사, 재판서·조서의 정본·등본·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)			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변론